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 방송통신이용자 피해 복잡·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용자정책국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개편하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시장조사심의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이용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하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경감 1명)을 증원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방송통신사무소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을 “운영지원과·감사담당관·방송정책국·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0호 중 “관리 및 정보 보호”를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6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병역 신고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6. 다른 기관의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7. 위원회 소관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회계검사

8. 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인가 등 관리·감독

24.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및 예·결산 등 관리·감독

제6조제4항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의2.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예·결산 등 관리·감독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밑에 시장조사심의관을 두며, 시장조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시장조사심의관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디지털이용자기반과·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통신분쟁조정팀·조사기획총괄과·방송시장조사과·통신시장조사과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⑤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개정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총괄·조정

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보 수집·분석·활용
5.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시행 관련 대외협력
6.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 지원
7.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8.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조사연구
9.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내 업무 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전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11.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 발간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본인확인수단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
4.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추진
5.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6.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추진
7.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
8.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접근 권한 동의 등 이용자 정보보호 조치 이행실태 점검·조사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사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위반내용의 공표

13.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법·제도에 관한 사항

14.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등록·인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5.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산업 정책의 수립

16. 위치정보서비스 개발·보급 및 기술표준의 보급·확산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3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및 조사

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20.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위치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조사

21.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22.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23.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평가 제도의 운영

24.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25. 방송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

26. 방송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의 평가

27. 노인 등 소외계층의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앱 보급

28.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이용자교육 및 참여방안 수립 및 운영

29. 민원예보 발령 등 방송통신피해 예방

⑦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

2.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지원과 인터넷
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

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
립과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6.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자율규제 체계 지원

8.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제재

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제재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 확인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13.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

14. 사이버 권리침해 관련 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⑧ 통신분쟁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2. 통신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3.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5.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6. 통신분쟁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⑨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4. 금지행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5.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6.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7.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8. 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결 보좌

9.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전조사보고서의 검토

10.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11. 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12. 금지행위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13.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관

14.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1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개정

- 16. 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재결서 작성
- 17. 금지행위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18.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9. 방송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⑩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 4.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 5.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 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7. 방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8.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9.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0.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11.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12.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3.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14.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15.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
 17. 방송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18.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9.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방송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20. 방송분쟁조정 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21. 방송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 ⑪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4.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상황의 점검·관리
5.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6.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사실조사 기획
7.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8. 기간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9. 기간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
10. 통신시장 동향 분석 및 시장모니터링
1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금지, 과다 지급 제한과 지원금 지급 내용·요건 공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행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4.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판매 관련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

15.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관련 긴급중지명령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장려금·출고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판매점 상호 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위반행위, 공정한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사실조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1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의 진술·청취

⑫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3.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상황의 점검·관리

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가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5.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가통신사업자 사실조사 기획

6.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7.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8.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방송기반총괄과·방송광고정책과·편성평가정책과·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및 방송시장조사과”를 “방송기반총괄과·방송광고정책과·편성평가정책과 및 미디어다양성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4제2항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5급”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19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1명(경감 1명)”을 “2명(경감 2명)”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34”를 “240”로 하고, 일반직 계 “227”을 “23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6”을 “7”로, 3급 또는 4급 이하 “219”를 “223”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을 “2”로 하며, 경감 이하 “1”을 “2”로 한다.

별표 1의3 중 총계 “45”를 “44”로 하고, 일반직 계 “45”를 “44”로 하며, 4급 이하 “45”를 “44”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96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1699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통신분쟁조정팀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통신분쟁조정팀장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통신분쟁조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통신시장조사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방송통신사무소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2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3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9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u>운영지원과 · 방송정책국 · 이용자정책국</u> 및 방송기반국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u>운영지원과 · 감사담당관 · 방송정책국 ·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획조정관) ① · ② (생략)	제5조(기획조정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③ ----- ----- --.
1. · 2. 삭제	
3. ~ 39. (생략)	3. ~ 39. (현행과 같음)
40. 위원회 내 정보자원의 <u>관리</u> 및 정보 보호	40. ----- <u>관리</u>
41. ~ 45. (생략)	41. ~ 45. (현행과 같음)
<u>46. 보안에 관한 사항</u>	<u><삭제></u>
47. ~ 49. (생략)	47. ~ 49.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운영지원과) ① (생략)	제5조의2(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u>	<u><삭제></u>
<u>6.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u>	<u><삭제></u>

7. <u>공무원의 병역 신고</u> 8. ~ 15. (생략) 16. <u>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u> 17. <u>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u> 18. <u>다른 기관의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u> 19. ~ 26. (생략) <u><신설></u>	<u><삭제></u> 8. ~ 15.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삭제></u> 19. ~ 26. (현행과 같음) <u>제5조의3(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u> <u>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u> <u>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u> <u>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병역 신고</u> <u>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u> <u>5.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u> <u>6. 다른 기관의 위원회와 그 소</u>
--	---

	<u>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u> <u>7. 위원회 소관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회계검사</u> <u>8. 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 항</u>
제6조(방송정책국) ①・② (생략)	제6조(방송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 24. 삭제	
<u><신설></u>	<u>23.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 방송공사 정관 인가 등 관리 · 감독</u>
<u><신설></u>	<u>24.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및 예·결산 등 관리·감독</u>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20. (생략)	1. ~ 20. (현행과 같음)
20의2. <u>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 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예·결산 등 관리 · 감독</u>	20의2. <u>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 육방송공사</u> ----- ----- -----
21. ~ 24. (생략)	21. ~ 24.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자정책국) ① 이용자정

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
총괄과·인터넷이용자정책과·
통신시장조사과·이용자보호과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및 단
말기유통조사팀을 두며, 각 과
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은 4급 또
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개정
3.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4.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5.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제85
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
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

제7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밑
에 시장조사심의관을 두며, 시
장조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한다.

③ 시장조사심의관은 제9항부
터 제12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이
용자정책총괄과·디지털이용자
기반과·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통신분쟁조정팀·조사기획총
괄과·방송시장조사과·통신시
장조사과 및 부가통신조사지원
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⑤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u>를」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u> <u>(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위”라</u> <u>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u> <u>관리</u> 6. <u>금지행위 관련 법령·제도의</u> <u>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u> 7. <u>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u> <u>및 분석</u> 8. <u>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u> <u>형사고발</u> 9. <u>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u> 10. <u>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결</u> <u>보좌</u> 11. <u>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u> <u>관련 안전조사보고서의 검토</u> 12. <u>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전</u> <u>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u> 13. <u>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u> <u>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u> <u>자료집 발간</u> 14. <u>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u> <u>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u> <u>제고</u> 15. <u>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u> <u>및 조정</u> 16. <u>금지행위 조사 관련 법령 및</u>	<u>법령의 분석 및 제정·개정</u> 3. <u>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u> <u>총괄·조정</u> 4. <u>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u> <u>정보 수집·분석·활용</u> 5. <u>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u> <u>수립·시행 관련 대외협력</u> 6. <u>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u> <u>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 지</u> <u>원</u> 7. <u>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u> <u>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u> <u>수립</u> 8. <u>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u> <u>조사연구</u> 9. <u>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내 업</u> <u>무 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u> <u>항</u> 10. <u>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전</u> <u>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u> 11. <u>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u> <u>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u> <u>자료집 발간</u> 12. <u>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u> <u>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⑥ <u>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u>
---	--

<u>규정의 제정·개정</u> 17. <u>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기관</u> 18. <u>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u> 19. <u>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개정</u> 20. <u>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u> 21. <u>삭제</u> 22. <u>통신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u> 23. <u>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재결서 작성</u> 24. <u>금지행위 및 통신분쟁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u> 25. <u>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u> 26. <u>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u> 27. <u>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u>	<u>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본인확인수단의 개발·보급</u> 2.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 4. <u>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 대책의 수립·추진</u> 5. <u>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u> 6. <u>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추진</u> 7. <u>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u> 8. <u>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u> 9.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접근 권한 동의 등 이용자 정보보호 조치 이행실태 점검·조사</u> 10.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u>
---	--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이
하 이 항에서 “이용자”라 한
다)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 ·
개정

2. 이용자 본인확인수단의 개발
· 보급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
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

5.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

6. 사이버 권리침해 관련 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7. 삭제

8. 삭제

9. 삭제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
록번호 사용 제한 이행여부
점검 및 조사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법령 위반 사
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위반내용의 공표

13.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
한 기본계획의 수립 · 추진 및
법 · 제도에 관한 사항

14.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등록
·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5.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산
업 정책의 수립

16. 위치정보서비스 개발 · 보급
및 기술표준의 보급 · 확산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3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

10.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 대책의 수립·추진

11.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12.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추진

13.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

14. 삭제

15.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접근 권한 동의 등 이용자 정보보호 조치 이행실태 점검·조사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이행여부 점검 및 조사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및 조사

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20.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위치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조사

21.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22.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23.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평가 제도의 운영

24.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25. 방송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 정책의 연계성 강화

<u>제76조에 따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u> 22.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위반내용의 공표 23. <u>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법·제도에 관한 사항</u> 24. <u>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인·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u> 25. <u>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산업 정책의 수립</u> 26. <u>위치정보서비스 개발·보급 및 기술표준의 보급·확산</u> 27. 「<u>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u>」 제14조 및 제43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8. 「<u>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u>」 제16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	<u>26. 방송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의 평가</u> 27. <u>노인 등 소외계층의 사이버 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앱 보급</u> 28. <u>방송통신서비스분야 이용자 교육 및 참여방안 수립 및 운영</u> 29. <u>민원예보 발령 등 방송통신 피해 예방</u> ⑦ <u>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u> 2. <u>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u> 3. <u>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u> 4. <u>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지원과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u> 5. <u>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관련 법령의</u>
--	---

<u>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및 조사</u> 2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30.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위치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조사 ⑤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2의2. 삭제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4.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u>제정·개정</u> 6. <u>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u> 7. <u>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자율 규제 체계지원</u> 8.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제재 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 실태 점검과 조사·제재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 확인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
---	---

5.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6. 전기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

7. 통신시장 동향 분석 및 시장 모니터링

8.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⑥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2.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4.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평가 제도의 운영

5.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6. 민원예보 발령 등 방송통신

12.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13.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

14. 사이버 권리침해 관련 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⑧ 통신분쟁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2. 통신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3.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5.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6. 통신분쟁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⑨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u>피해 예방</u> 7. <u>방송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 정책의 연계성 강화</u> 8. <u>방송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의 평가</u> 9. <u>노인 등 소외계층의 사이버 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앱 보급</u> 10. <u>방송통신서비스분야 이용자 교육 및 참여방안 수립 및 운영</u> 11. <u>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실조사 기획</u> 12. <u>방송통신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시정 조치 및 이행상황의 점검·관리</u> ⑦ <u>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u> 2. <u>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u> 3. <u>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u>	3. 「<u>전기통신사업법</u>」 제50조, 「<u>방송법</u>」 제76조의3·제85조의2, 「<u>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u>」 제17조 및 「<u>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u>」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4. <u>금지행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u> 5. <u>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u> 6. <u>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u> 7. <u>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u> 8. <u>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결 보좌</u> 9. <u>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조사보고서의 검토</u> 10. <u>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u> 11. <u>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u> 12. <u>금지행위 조사 관련 법령 및</u>
--	--

4.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지원과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
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통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6.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통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제재
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통정보 유통 방지 조치 실태 점검과 조사·제재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 확인과 공개 등

규정의 제정·개정

13.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관
14.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1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개정
16. 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재결서 작성
17. 금지행위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9. 방송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⑩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에 관한 사항

⑧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금지, 과다 지급 제한과 지원금 지급 내용·요건 공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행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판매 관련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
5.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관련 긴급중지명령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장려금·출고

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4.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5.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7. 방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7.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판
매점 상호 간의 금지 또는 제
한 규정 위반행위, 공정한 유
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사실조사와 시정조치에 관
한 사항

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
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의
진술·청취

8.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
립에 관한 사항

9.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
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0.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11.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
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
표 및 경영분석

12.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
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
한 사항

13.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14.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
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
의 개선

15.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
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
실조사보고서의 작성

17. 방송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18.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9.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방송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20. 방송분쟁조정 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21. 방송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⑪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및 방송통신사
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
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
견진술·청취
4.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
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 시정조치 및 이행상황의 점
검·관리
5.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6.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사실조사 기
획
7.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
리
8. 기간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에 대한 제재조치
9. 기간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
10. 통신시장 동향 분석 및 시장
모니터링

1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금지, 과다 지급 제한과 지원금 지급 내용·요건 공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행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4.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판매 관련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
15.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관련 긴급중지명령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장려금·출고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

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 판매점 상호 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위반행위, 공정한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사실조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1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의 진술 · 청취

⑫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 · 청취

3.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 시정조치 및 이행상황의 점검 · 관리

제8조(방송기반국) ① (생략)

② 방송기반국에 방송기반총괄과 · 방송광고정책과 · 편성평가정책과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및 방송시장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⑦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

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가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5.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가통신사업자 사실조사 기획

6.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7.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8.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 · 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방송기반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방송기반총괄과 · 방송광고정책과 · 편성평가정책과 및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③ ~ ⑥ (현행과 같음)

<삭제>

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
정조치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
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
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
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4.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
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
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
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
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5.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
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
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
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
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
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7. 방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7의2.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7의3.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

경조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7의4.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

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

한 사항

8.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

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

표 및 경영분석

9.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

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

한 사항

10.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11.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

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

의 개선

12.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

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
실조사보고서의 작성

14. 방송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합
의 권고에 관한 사항

15.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
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16.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
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
지행위 및 방송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
영

17. 방송분쟁조정 절차 및 제도
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18. 방송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
국민 홍보

제9조의4(관할팀) ① (생략)

② 관할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
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

제9조의4(관할팀) ① (현행과 같
음)

② -----
----- 5급-----

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④ 삭제

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20명-----

-----.

⑤ -----
--- 2명(경감 2명)-----

--. -----

-----.

대통령령 제31496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영 시
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3의
비서(6급 상당) 1명 및 행정사
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명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별표 1의3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
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명 및 행정주사·공업주사·전
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방
송통신주사 4명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31699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31496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대통령령 제31699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단말기유통조사팀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이 분장하
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이 분장하
는 사항은 통신시장조사과장이
분장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의2]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34</u>	<u>240</u>	+6
•	•	•	
•	•	•	
•	•	•	
일반직 계	<u>227</u>	<u>232</u>	+5
고위공무원단	<u>6</u>	<u>7</u>	+1
3급 또는 4급 이하	<u>219</u>	<u>223</u>	+4
•	•	•	
경찰공무원 계	<u>1</u>	<u>2</u>	+1
경감 이하	<u>1</u>	<u>2</u>	+1

[별표 1의3]

방송통신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2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5</u>	<u>44</u>	-1
일반직 계	<u>45</u>	<u>44</u>	-1
4급 이하	<u>45</u>	<u>44</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4